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'2024년 7월 30일'에서 '2027년 7월 30일'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2) 행정예고 미 대상(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)으로 행정예고 생략

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

수직분리축소구역 운영지침 일부개정안

수직분리축소구역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훈령은”을 “지침은”으로 하며, “2024년”을 “2027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유효기간) 이 <u>훈령</u> 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</u> 7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8조(유효기간) --- <u>지침</u> 은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</u> -----.